

주요 노동동향

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◆ 2023년 4월 생산은 전월대비 1.4% 감소(전년동월대비 0.8% 감소)

-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, 공공행정, 광공업,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.4% 감소함.
 - －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,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, 광공업,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.8% 감소함.
- 제조업 생산은 통신·방송장비, 반도체 등에서 늘었으나, 기계장비, 의약품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.2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9.0% 감소).
-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·보험 등에서 늘었으나, 도소매, 운수·창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3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3.1% 증가).

◆ 2023년 4월 소비는 전월대비 2.3% 감소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.9% 증가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(-6.3%),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-1.2%),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(-1.7%)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.3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1.1% 감소).
- 설비투자는 영상,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계류(-0.6%)에서 투자가 줄었으나, 항공기 등 운송장비(5.9%)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0.9% 증가함(전년동월대비 4.4% 증가).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1.2% 증가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19.5% 감소함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| | | 연간 | | | 분기 | | | | 분기 | | | | 월 | | |
|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2020 | 2021 | 2022 | 2021 | | | | 2022 | | | | 2022 | 2023 | |
| | | | 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4월 | 3월p | 4월p |
| 생산 | 전산업 | -1.2 | 5.3 | 4.6 | 1.8 | 1.0 | 0.6 | 2.6 | 1.6 | 0.8 | 0.4 | -1.5 | -0.3 | 1.2(2.0) | -1.4(-0.8) |
| | 광공업 | -0.3 | 8.2 | 1.4 | 3.3 | -1.3 | 1.7 | 2.9 | 3.2 | -2.3 | -2.4 | -6.4 | -3.2 | 5.3(-7.6) | -1.2(-8.9) |
| | 제조업 | -0.2 | 8.4 | 1.4 | 3.4 | -1.5 | 1.6 | 3.1 | 3.2 | -2.2 | -2.6 | -6.7 | -3.2 | 5.6(-7.7) | -1.2(-9.0) |
| | 건설업 | -2.1 | -6.7 | 2.7 | -2.9 | -3.3 | -0.6 | 2.4 | 0.5 | -0.1 | 0.8 | 4.6 | -1.2 | -4.3(12.0) | 1.2(12.2) |
| | 서비스업 | -2.0 | 5.0 | 6.7 | 1.2 | 2.2 | 0.3 | 2.6 | 0.8 | 2.9 | 1.7 | 0.1 | 1.9 | -0.5(6.2) | -0.3(3.1) |
| 소비 | 소비재 판매 | -0.1 | 5.8 | -0.3 | 2.9 | 1.5 | 1.1 | 0.5 | -0.7 | -1.0 | 0.3 | -0.9 | -1.2 | 0.1(0.1) | -2.3(-1.1) |
| 투자 | 설비투자 | 5.9 | 9.6 | 3.3 | 6.3 | 1.4 | -1.7 | -0.4 | 0.4 | -0.4 | 8.6 | -0.2 | -5.3 | -2.4(1.8) | 0.9(4.4) |
| 물가 | | 0.5 | 2.5 | 5.1 | 1.3 | 0.5 | 0.7 | 1.0 | 1.5 | 2.1 | 1.1 | 0.4 | 0.7 | 0.2(3.7) | 0.3(3.3) |

- 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-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를 포괄함.
- 3)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- 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5월, 2023년 4월, 2023년 5월 기준임.
- 5) p는 잠정치임.
- 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- 7) (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◆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3% 상승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4%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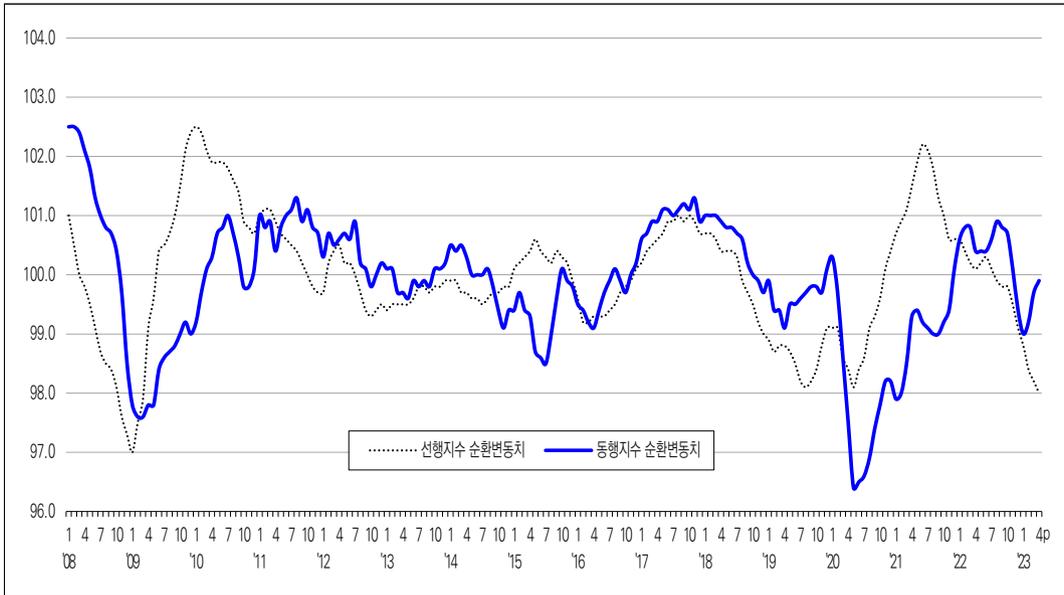
○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.13(2020=100)으로 전월대비 0.3% 상승함(전년동월대비 3.3% 상승).

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월대비 의류·신발(3.1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0.5%), 음식·숙박(0.3%)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0.7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0.1%), 보건(0.1%), 오락·문화(0.2%), 교육(0.1%)은 상승, 통신은 변동 없으며, 주류·담배(-0.1%), 기타 상품·서비스(-0.3%), 교통(-0.4%)은 하락함.
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.4% 상승, 식품이외도 전월대비 0.4% 상승하여 전월대비 0.4% 상승함.

◆ 2023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4% 증가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1% 증가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2p 상승함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2p 하락함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 : 1) p는 잠정치임.
 2)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=1000이 기준.
 자료 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범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고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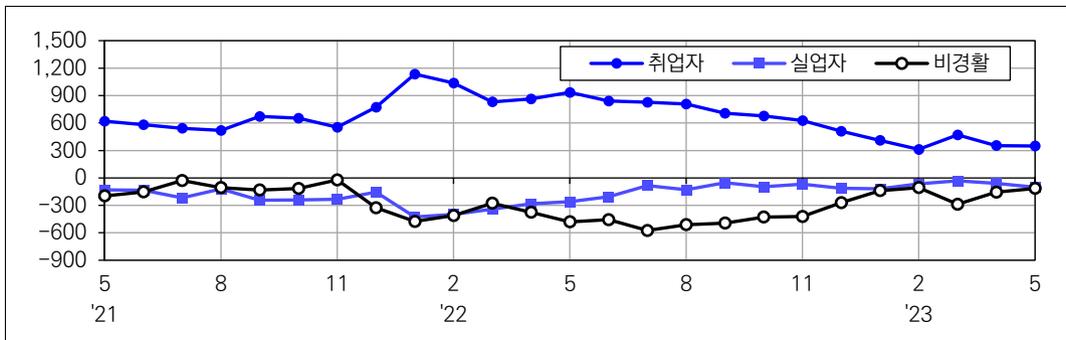
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유지,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

○ 2023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을 유지함(전월대비¹⁾ 9만 2천 명 증가).

- (산업별) 전년동월대비 5월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. 건설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. 서비스업 취업자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도소매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사업관리지원은 증가로 전환됨.
- (연령별) 전년동월대비 5월은 20대에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30대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 20대는 제조업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에서 증가로 전환됨. 3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
- (종사상 지위별) 전년동월대비 5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·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.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도소매 및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
- (일시휴직자) 5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(4월 -8만 3천 명)됨. 전월대비로는 1만 6천 명 증가함.
- (실업자) 5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(4월 -5만 9천 명)됨. 전월대비로는 2만 5천 명 감소함.

[그림 1] 취업자, 실업자, 비경황 증감 현황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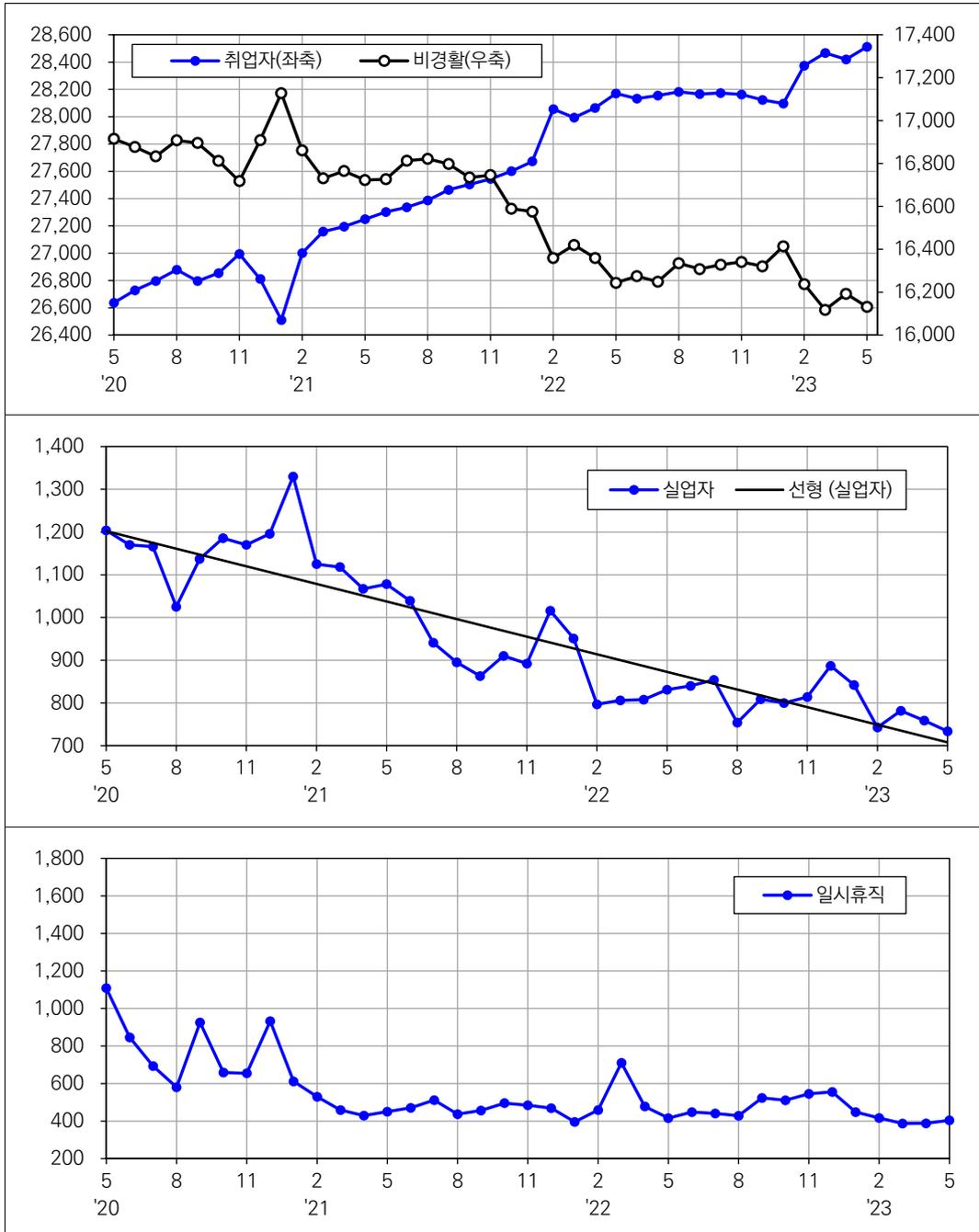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2]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, 실업자, 일시휴직자 변화

(단위 : 천 명)



주 : 일시휴직자는 X-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.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2023년 5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30대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 반면 60세 이상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비경활은 증가폭이 확대됨.

-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제조업, 보건복지 및 사업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에서 증가로 전환됨. 3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전문과학기술, 사업관리지원 및 도소매에서는 증가로 전환됨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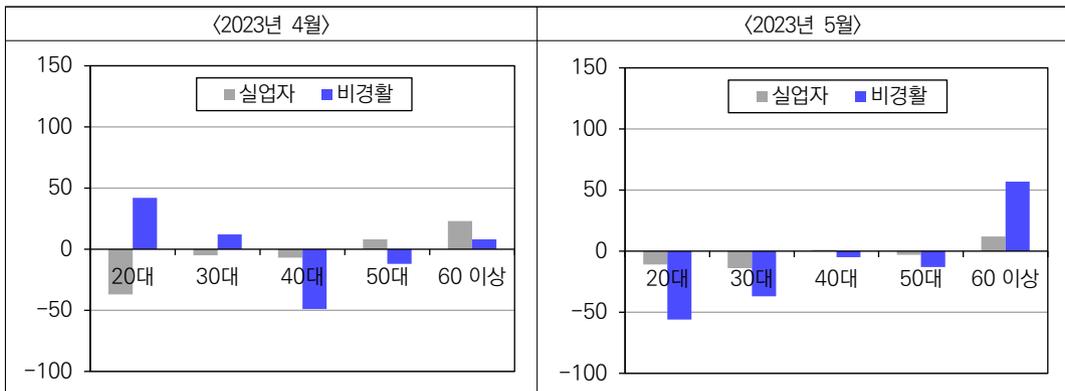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월대비, (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| | 15~19세 | | | | 20대 | | | | 30대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
| 취업자 | -3 | -21 | -36 | (5) | -86 | -116 | -63 | (49) | 24 | 15 | 70 | (46) |
| 실업자 | -11 | -9 | -6 | (1) | 2 | -47 | -67 | (-11) | 20 | -1 | -32 | (-14) |
| 비경활 | 20 | 42 | 59 | (-5) | -104 | -31 | -66 | (-56) | -137 | -102 | -119 | (-37) |
| 실업률 | -5.1 | -4.1 | -1.9 | (0.3) | 0.2 | -0.9 | -1.4 | (-0.3) | 0.4 | 0.0 | -0.6 | (-0.3) |
| 고용률 | -0.1 | -0.9 | -1.7 | (0.2) | 0.5 | 0.0 | 0.9 | (1.0) | 1.4 | 1.2 | 2.0 | (0.7) |
| | 40대 | | | | 50대 | | | | 60세 이상 | | | |
|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 3월 | 4월 | 5월 | (전월비) |
| 취업자 | -63 | -22 | -48 | (-5) | 50 | 55 | 49 | (14) | 547 | 442 | 379 | (-28) |
| 실업자 | 3 | -7 | -7 | (1) | 0 | 11 | 9 | (-3) | -48 | -7 | 2 | (12) |
| 비경활 | -47 | -82 | -60 | (-5) | -43 | -65 | -62 | (-13) | 22 | 82 | 132 | (57) |
| 실업률 | 0.0 | -0.1 | -0.1 | (0.0) | 0.0 | 0.1 | 0.1 | (0.0) | -1.0 | -0.2 | -0.1 | (0.2) |
| 고용률 | 0.3 | 0.8 | 0.5 | (0.0) | 0.5 | 0.7 | 0.6 | (0.1) | 2.4 | 1.5 | 1.0 | (-0.3) |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그림 3〉 연령별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: 계절조정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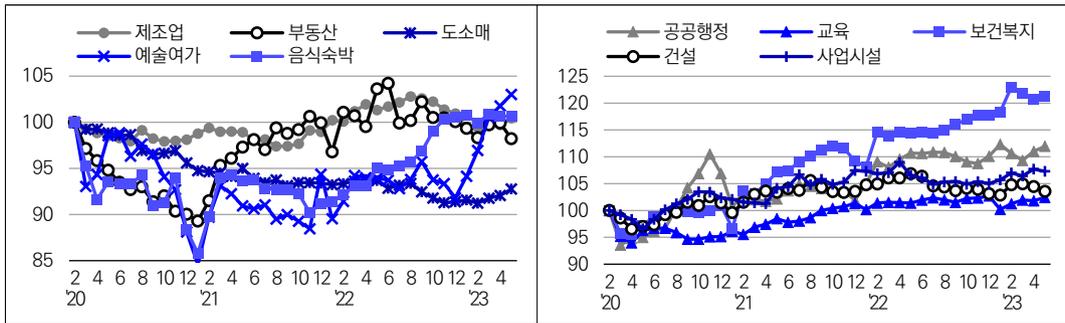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(전월대비) 산업별로는 부동산, 건설, 사업시설이 감소함. 반면 음식숙박은 정체됨. 제조업, 도소매, 예술여가, 공공행정, 교육 및 보건복지는 증가함.
 - 도소매 및 부동산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.

[그림 4]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: 계절조정계열,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표 2>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명, %)

| | 전년동월대비(원계열) | | | 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 | | | 3개월 전 대비(계절조정계열)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 증감 | 증감률 |
| 농림어업 | 30 | 12 | -15 | 29 | -24 | -8 | -3 | -0.2 |
| 광업 | -5 | -6 | -2 | 1 | -1 | 2 | 2 | 30.3 |
| 제조업 | -49 | -97 | -39 | 27 | -16 | 32 | 44 | 1.0 |
| 전기·가스·증기 | 14 | 7 | 5 | -3 | -5 | 0 | -7 | -8.2 |
| 수도·원료재생 | -15 | -6 | -4 | 8 | -4 | 1 | 4 | 2.7 |
| 건설업 | -20 | -31 | -66 | 4 | -10 | -18 | -25 | -1.2 |
| 도매 및 소매업 | -66 | -62 | -31 | 20 | 10 | 25 | 55 | 1.7 |
| 운수 및 창고업 | -10 | -13 | -25 | 2 | 13 | 20 | 35 | 2.1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177 | 171 | 128 | 24 | -6 | -1 | 17 | 0.7 |
| 정보통신업 | 65 | 30 | 61 | 8 | -12 | 35 | 31 | 3.0 |
| 금융 및 보험업 | 24 | 17 | 11 | 16 | -27 | 3 | -9 | -1.1 |
| 부동산업 | -5 | 2 | -30 | 8 | 1 | -9 | -1 | -0.1 |
| 전문·과학·기술 | 60 | 100 | 111 | 8 | 29 | 30 | 67 | 5.0 |
| 사업시설관리지원 | -8 | -17 | 10 | -7 | 17 | -5 | 4 | 0.3 |
| 공공행정·사회보장 | 14 | 18 | 15 | -14 | 19 | 10 | 15 | 1.2 |
| 교육서비스업 | 8 | 7 | 20 | 13 | -2 | 11 | 22 | 1.2 |
| 보건 및 사회복지 | 186 | 148 | 166 | -28 | -23 | 13 | -38 | -1.3 |
| 예술·스포츠·여가 | 32 | 40 | 47 | 19 | 6 | 6 | 31 | 6.3 |
| 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 | 29 | 24 | -15 | -9 | -5 | -18 | -32 | -2.8 |
| 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 | 7 | 6 | 4 | -10 | -4 | 1 | -12 | -12.9 |
| 국제 및 외국기관 | 2 | 4 | 1 | -1 | -1 | -1 | -4 | -18.8 |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5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.

-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도소매, 정보통신, 전문과학기술 및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 음식숙박 및 협회단체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부동산에서 감소로 전환됨. 농림어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 일용직은 건설업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운수창고에서 감소로 전환됨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, %)

| | 전년동월대비(원계열) | | | 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 | | | 3개월 전 대비(계절조정계열)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 증감 | 증감률 |
| 상용직 | 497 | 464 | 591 | 138 | 58 | 168 | 364 | 2.3 |
| 임시직 | -75 | -100 | -158 | -61 | -80 | -6 | -147 | -3.1 |
| 일용직 | 11 | -76 | -133 | 43 | -69 | -45 | -72 | -6.4 |
|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| 81 | 55 | 53 | 19 | -8 | 9 | 20 | 1.4 |
|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| 10 | 56 | 41 | -54 | 52 | 15 | 13 | 0.3 |
| 무급가족종사자 | -55 | -45 | -44 | 12 | -1 | 4 | 14 | 1.6 |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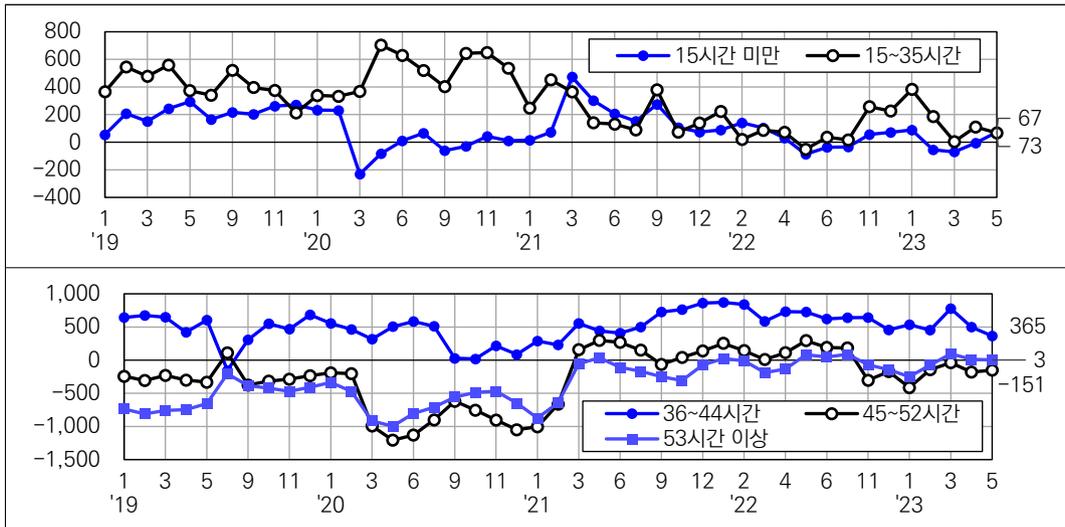
| | 상용직 | | | 임시직 | | | 일용직 | | |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| | |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| |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 3월 | 4월 | 5월 |
| 농림어업 | -2 | -5 | -12 | -13 | -9 | -22 | 2 | -4 | -9 | -18 | -19 | -20 | 58 | 51 | 54 |
| 제조업 | -2 | -37 | 5 | -27 | -34 | -21 | -18 | -28 | -32 | 20 | 10 | 14 | -12 | 0 | -1 |
| 건설업 | 33 | 32 | 20 | -12 | -21 | -20 | -28 | -40 | -56 | -5 | -1 | -3 | -1 | 5 | -5 |
| 도소매 | 26 | 8 | 54 | -34 | -21 | -24 | -1 | -1 | 5 | -10 | -23 | -25 | -30 | -15 | -23 |
| 운수창고 | 7 | -1 | 2 | -29 | -25 | -30 | 8 | 2 | -10 | 11 | 8 | 5 | -4 | 6 | 8 |
| 음식숙박 | 89 | 95 | 77 | 57 | 54 | 30 | 15 | -2 | -6 | 37 | 47 | 44 | -13 | -16 | -15 |
| 정보통신 | 59 | 20 | 45 | -3 | 0 | 1 | -2 | 2 | 3 | 4 | 6 | 9 | 6 | 2 | 3 |
| 금융보험 | 20 | 11 | 10 | -6 | -6 | -14 | 0 | -1 | 2 | 7 | 3 | 2 | 3 | 10 | 8 |
| 부동산 | -4 | -5 | -15 | 10 | 10 | -8 | 2 | 0 | 0 | 1 | 3 | 3 | -14 | -6 | -11 |
| 전문과학기술 | 26 | 66 | 85 | 11 | 15 | 14 | 6 | 1 | 2 | 21 | 20 | 14 | -3 | -2 | -5 |
| 사업관리지원 | -42 | -25 | -10 | 2 | -7 | 3 | 19 | 3 | 3 | 8 | 8 | 8 | 10 | 9 | 10 |
| 공공행정 | 30 | 35 | 32 | -15 | -17 | -14 | -1 | -1 | -2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교육서비스 | 4 | 18 | 43 | -7 | -13 | -21 | 3 | 1 | 0 | 2 | -7 | -5 | 15 | 16 | 12 |
| 보건복지 | 199 | 194 | 219 | -17 | -42 | -42 | -4 | -5 | -6 | 3 | 0 | -7 | 7 | 3 | 2 |
| 예술스포츠 | 14 | 15 | 14 | 23 | 33 | 28 | 4 | 4 | 2 | 10 | 3 | 8 | -15 | -12 | -7 |
| 협회단체 | 42 | 38 | 17 | -12 | -16 | -14 | 1 | -6 | -29 | -7 | -3 | 3 | -1 | 5 | 8 |
| 가구 내 고용 | 1 | 1 | -1 | 1 | 3 | 0 | 3 | -1 | 1 | - | - | - | 2 | 2 | 4 |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2023년 5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2시간 감소함.
- 이는 36~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45~52시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영향임.

[그림 5]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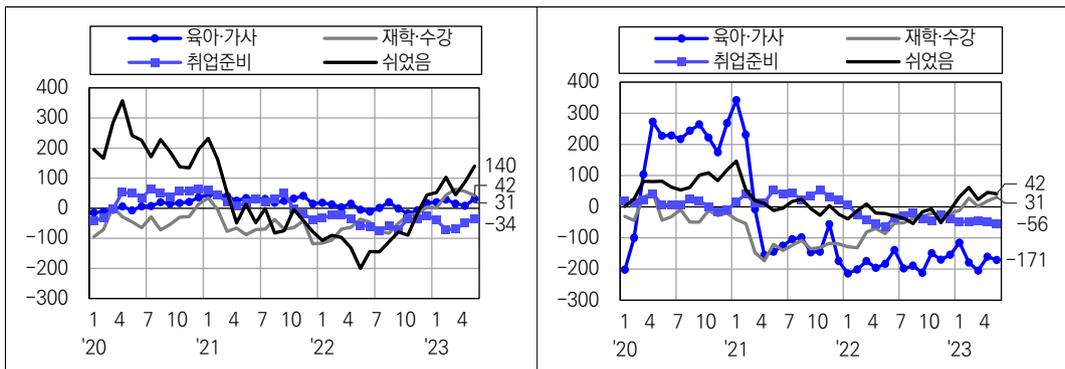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-11만 5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(4월 -15만 6천 명)됨.
-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+11만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여성은 -22만 5천 명으로 재학·수강에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고 육아·가사에서는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.

[그림 6] 성별(남자 : 좌, 여자 : 우)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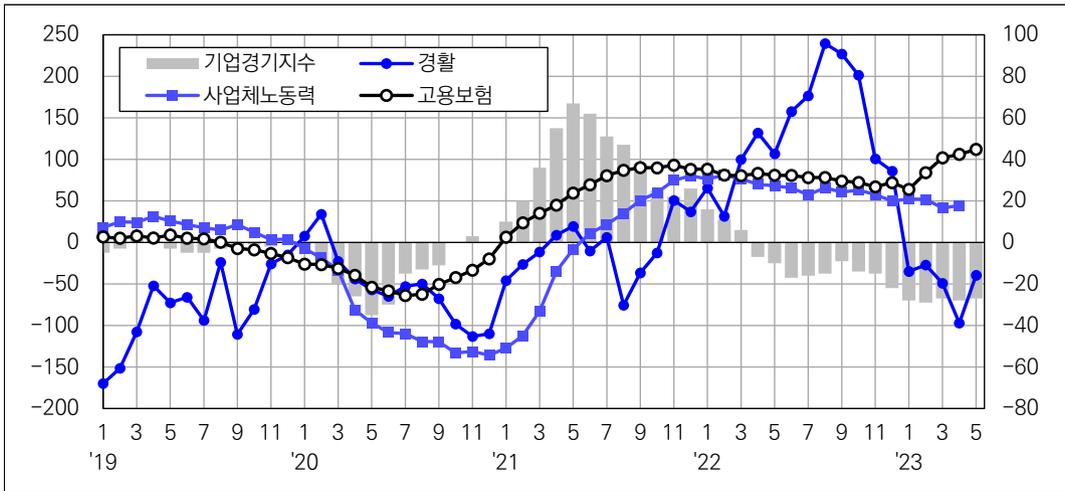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◆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,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유지

- 2023년 5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.
 -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반영된 영향임.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. 기업경기지수는 감소세를 유지함.
 -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3만 2천 명 증가함.

[그림 7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8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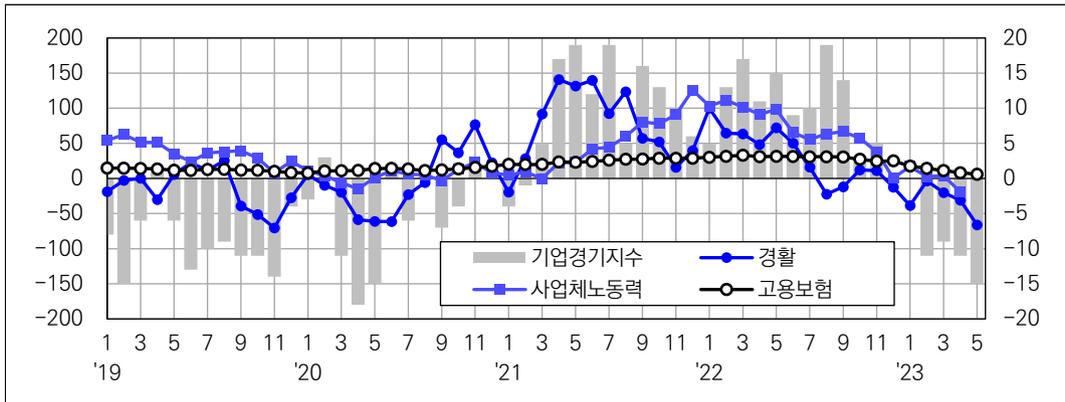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2023년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.
 -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로 전환됨.

[그림 9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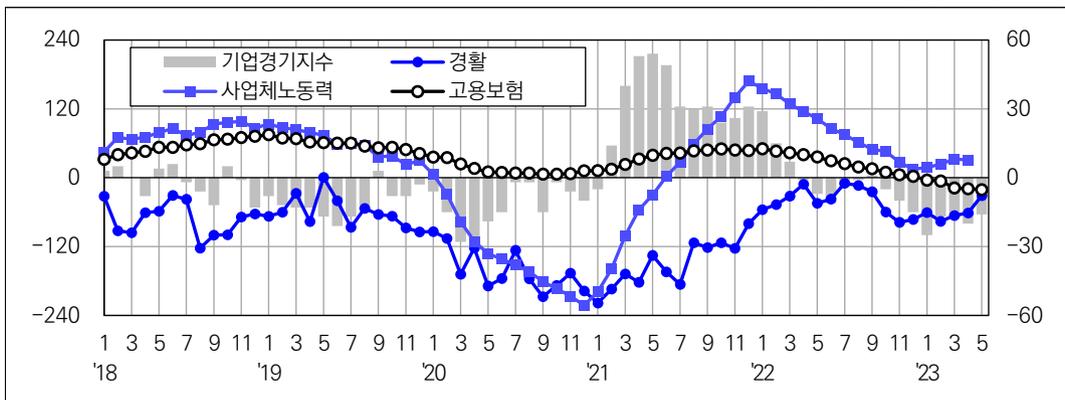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- 2023년 5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을 유지함.
 - (도소매) 경찰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됨.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폭이 확대됨.
 - (숙박음식) 경찰 취업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이 축소됨.
 - (정보통신)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.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.
 - (사업관리지원) 경찰 취업자는 증가로 전환됨.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세를 유지함.

[그림 10]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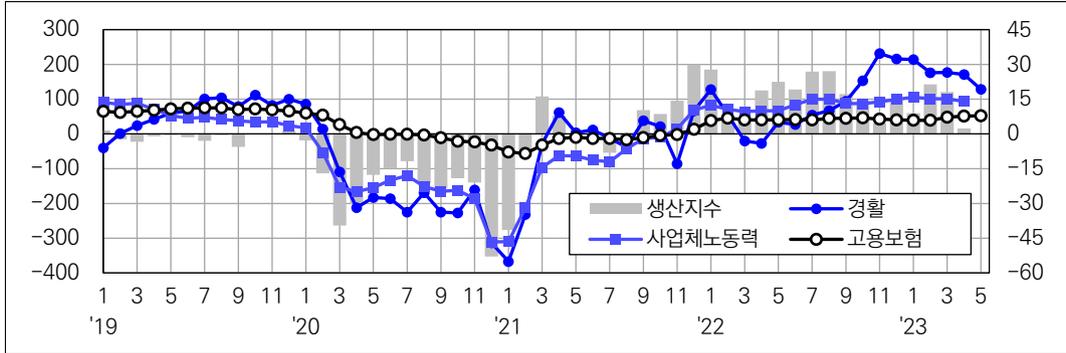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11]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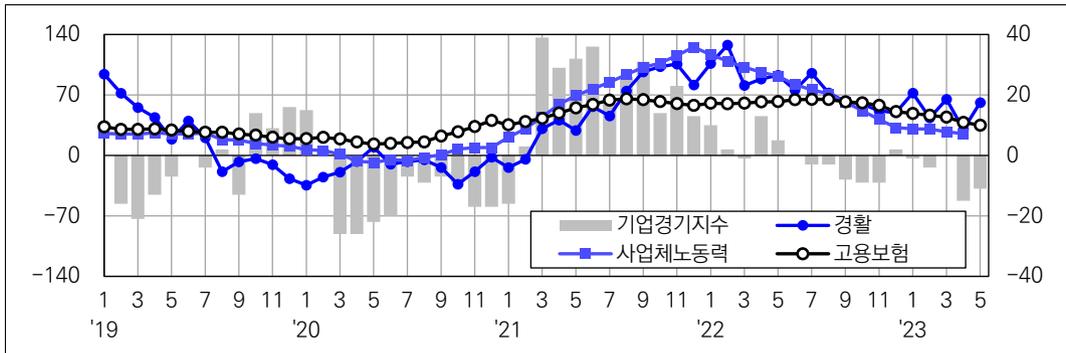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2]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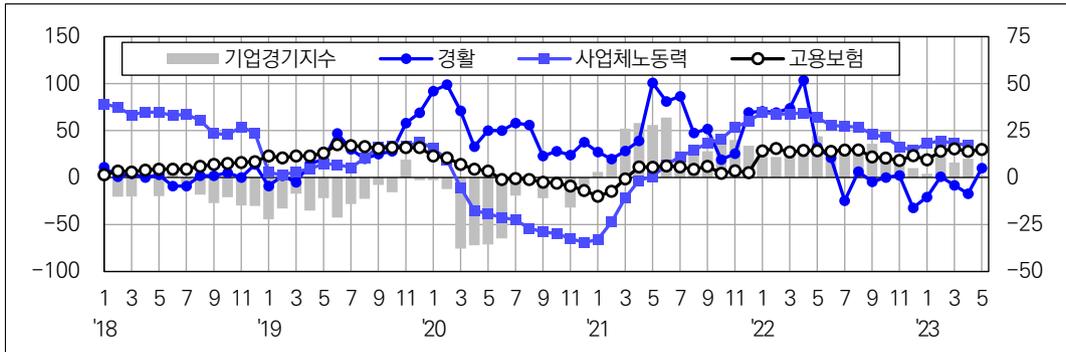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13]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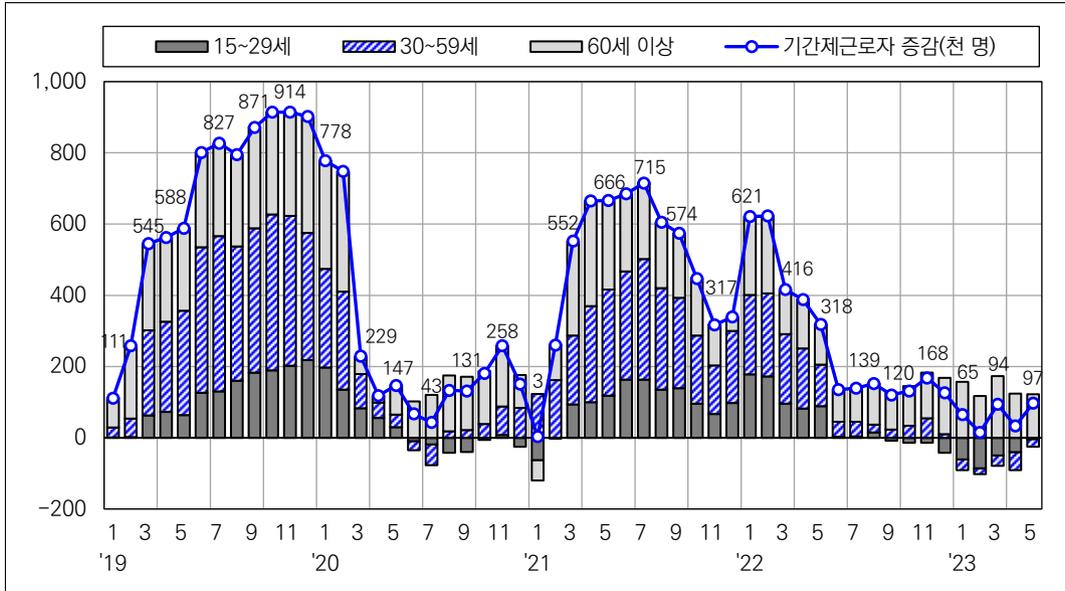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○ 2023년 5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. 기간제는 연령별로 60세 미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'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'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.

[그림 14]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◆ 2023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.6% 증가

- 2023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 7천 원(1.6%)임.
 - － 2023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3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,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6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.3% 증가함.
 - －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특별급여(-10.9%)의 감소에서 기인함. 특별급여의 감소는 전년도 증가에 따른 기저와 금융 및 보험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한 영향임. 특히 부동산업(-55.6%), 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-36.1%), 금융 및 보험업(-30.9%) 등에서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컸음.
 - ※ 초과급여 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
특별급여 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-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.0)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.6% 감소함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| 근로자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2 | | 2023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1~3월 | 3월 | 1~3월 | 3월 | |
|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| 3,490 (3.4) | 3,527 (1.1) | 3,689 (4.6) | 3,869 (4.9) | 4,084 (7.2) | 3,837 (6.4) | 4,164 (2.0) | 3,897 (1.6) | |
| 상용 근로자 | 임금총액 | 3,702 (3.1) | 3,719 (0.4) | 3,893 (4.7) | 4,095 (5.2) | 4,324 (7.6) | 4,426 (2.4) | 4,130 (2.0) | |
| | 정액급여 | 3,010 (4.1) | 3,077 (2.2) | 3,181 (3.4) | 3,319 (4.3) | 3,288 (4.1) | 3,280 (4.1) | 3,428 (4.4) | |
| | 초과급여 | 202 (2.7) | 200 (-0.9) | 208 (3.7) | 220 (5.7) | 212 (5.7) | 223 (8.0) | 211 (-0.2) | 217 (-2.3) |
| | 특별급여 | 490 (-2.8) | 441 (-9.9) | 504 (14.3) | 556 (10.4) | 824 (25.0) | 548 (25.5) | 787 (-4.5) | 488 (-10.9) |
|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| 1,517 (6.2) | 1,636 (7.8) | 1,700 (3.9) | 1,747 (2.8) | 1,716 (3.3) | 1,745 (3.0) | 1,731 (0.9) | 1,768 (1.3) | |
| 소비자물가지수 | 105.1 (0.4) | 105.7 (0.5) | 104.0 (2.5) | 109.3 (5.1) | 106.1 (3.8) | 106.1 (4.1) | 110.6 (4.7) | 110.6 (4.2) | |
| 실질임금증가율 | 3.0 | 0.5 | 2.0 | -0.2 | 3.2 | -9.8 | -2.7 | -2.6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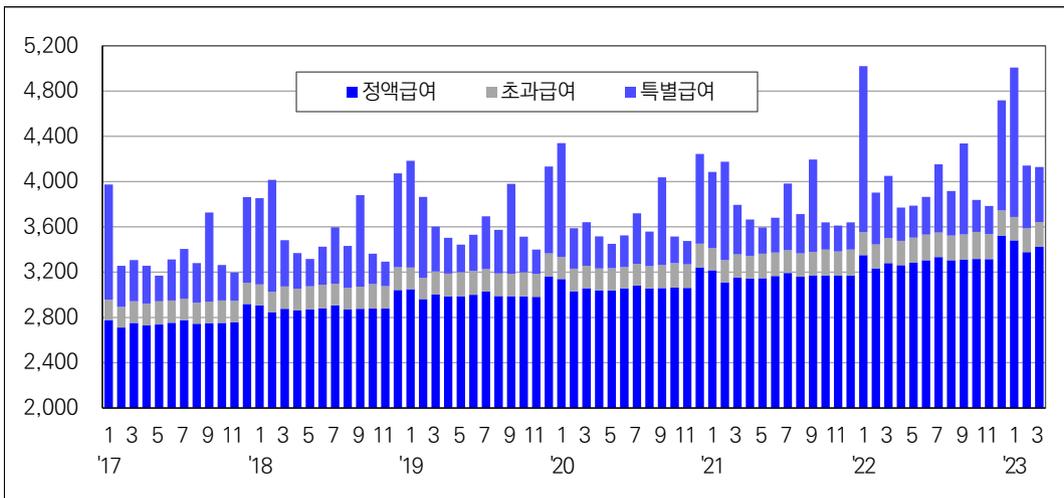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〔그림 1〕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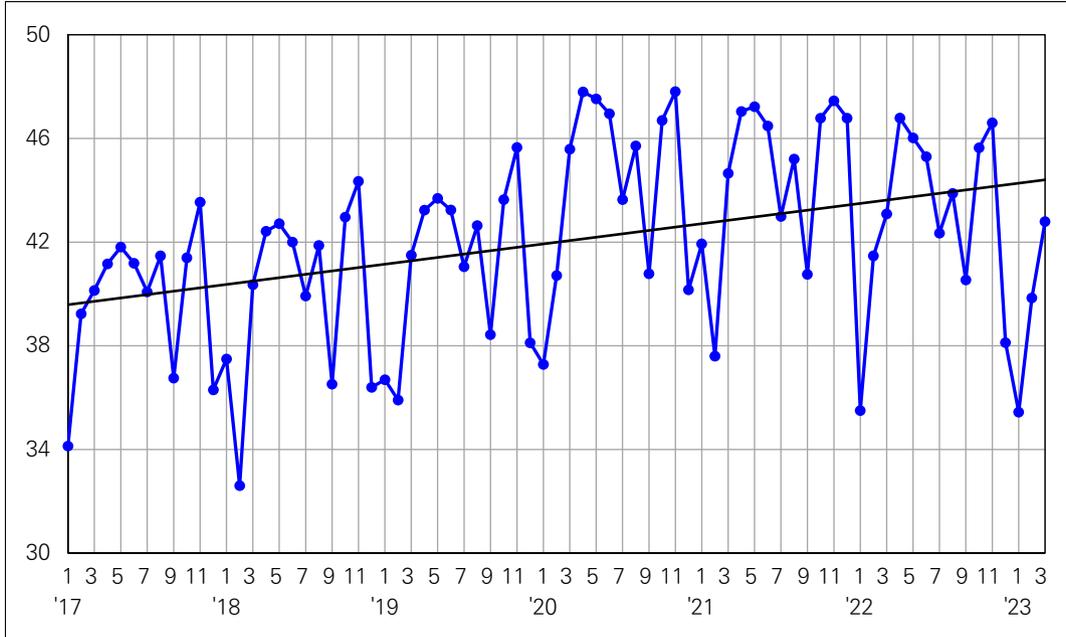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·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 : %, 상용근로자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3월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

○ 2023년 3월 중소기업(상용근로자 1~299인) 사업체의 임금은 347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.4% 증가, 대규모(상용근로자 300인 이상) 사업체의 임금은 596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.9% 증가함.²⁾

-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.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(-38.1%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-28.4%), 금융 및 보험업(-23.7%) 등임.
-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.2%, 1.8% 증가함.

2)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~299인,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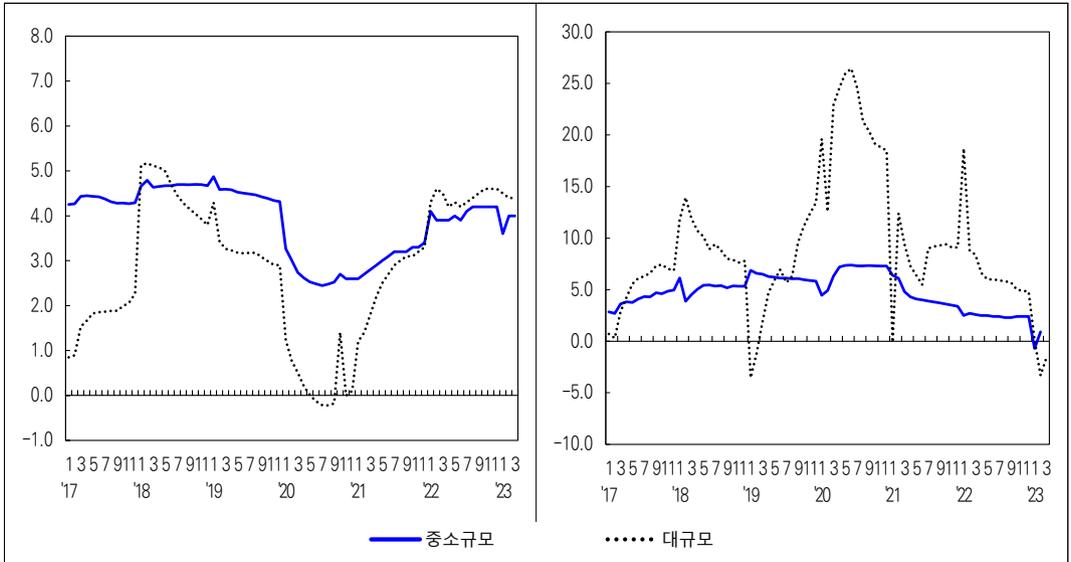
| | | 2021 | 2022 | 2022 | | 2023 |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| | 1~3월 | 3월 | 1~3월 | 3월 |
| 중소 규모 | 소 계 | 3,316 (3.8) | 3,462 (4.4) | 3,517 (4.9) | 3,426 (5.0) | 3,581 (1.8) | 3,475 (1.4) |
| | 상용임금총액 | 3,510 (3.9) | 3,675 (4.7) | 3,731 (5.3) | 3,626 (5.2) | 3,815 (2.3) | 3,694 (1.9) |
| | 정액급여 | 3,012 (3.4) | 3,139 (4.2) | 3,104 (3.9) | 3,092 (4.0) | 3,229 (4.0) | 3,222 (4.2) |
| | 초과급여 | 176 (2.9) | 186 (5.7) | 180 (5.8) | 192 (8.3) | 174 (-3.2) | 182 (-5.1) |
| | 특별급여 | 322(10.4) | 350 (8.7) | 447(15.1) | 342(16.4) | 412(-7.8) | 290(-15.1) |
| | 임시일용임금총액 | 1,671 (3.4) | 1,711 (2.4) | 1,671 (2.6) | 1,714 (2.5) | 1,688 (1.0) | 1,735 (1.2) |
| 대규모 | 소 계 | 5,582 (6.5) | 5,922 (6.1) | 6,944(13.2) | 5,911(10.8) | 7,028 (1.2) | 5,963 (0.9) |
| | 상용임금총액 | 5,687 (6.6) | 6,049 (6.4) | 7,095(13.7) | 6,036(11.1) | 7,197 (1.4) | 6,095 (1.0) |
| | 정액급여 | 3,973 (3.3) | 4,155 (4.6) | 4,149 (4.5) | 4,157 (4.4) | 4,330 (4.4) | 4,338 (4.3) |
| | 초과급여 | 357 (5.1) | 377 (5.5) | 362 (5.4) | 368 (7.3) | 381 (5.2) | 377 (2.6) |
| | 특별급여 | 1,357(18.1) | 1,516(11.8) | 2,583(34.1) | 1,511(36.7) | 2,485(-3.8) | 1,379 (-8.7) |
| | 임시일용임금총액 | 2,214 (9.1) | 2,321 (4.8) | 2,436 (8.4) | 2,236 (7.3) | 2,397(-1.6) | 2,278 (1.8) |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그림 3〉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 (단위: %)



주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(-11.5%), 부동산업(-1.7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(-0.8%)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

○ 2023년 3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9.9%), 건설업(5.1%), 정보통신업(5.1%) 등이며, 제조업(3.8%)도 평균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2023년 3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856만 8천 원)이고,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(776만 3천 원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31만 6천 원), 정보통신업(525만 1천 원)인 반면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203만 8천 원)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: 천 원, %)

| | 2021 | 2022 | 2022 | | 2023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1~3월 | 3월 | 1~3월 | 3월 |
| 전 산업 | 3,689(4.6) | 3,869(4.9) | 4,084(7.2) | 3,837(6.4) | 4,164(2.0) | 3,897(1.6) |
| 광업 | 4,415(2.1) | 4,608(4.4) | 4,599(4.4) | 4,499(3.5) | 4,712(2.5) | 4,723(5.0) |
| 제조업 | 4,239(6.2) | 4,484(5.8) | 4,946(10.8) | 4,255(8.1) | 5,072(2.5) | 4,415(3.8) |
|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6,753(0.3) | 6,907(2.3) | 6,816(1.7) | 8,514(2.5) | 7,885(15.7) | 8,568(0.6) |
|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| 4,094(5.3) | 4,168(1.8) | 4,110(1.7) | 4,051(0.1) | 4,207(2.4) | 4,134(2.0) |
| 건설업 | 3,106(2.4) | 3,229(4.0) | 3,240(4.3) | 3,165(4.7) | 3,376(4.2) | 3,326(5.1) |
| 도매 및 소매업 | 3,551(3.7) | 3,773(6.3) | 3,853(6.1) | 3,814(9.2) | 4,017(4.3) | 3,900(2.3) |
| 운수 및 창고업 | 3,795(7.5) | 4,040(6.5) | 3,963(6.5) | 3,791(11.1) | 4,170(5.2) | 3,949(4.2)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1,905(1.4) | 2,004(5.2) | 1,970(4.0) | 1,951(4.7) | 2,094(6.3) | 2,038(4.5) |
| 정보통신업 | 4,796(4.0) | 4,999(4.2) | 5,426(3.6) | 4,995(-6.1) | 5,503(1.4) | 5,251(5.1) |
| 금융 및 보험업 | 6,963(6.7) | 7,324(5.2) | 8,902(11.6) | 8,776(12.5) | 8,494(-4.6) | 7,763(-11.5) |
| 부동산업 | 2,954(3.7) | 3,086(4.5) | 3,214(7.8) | 3,139(8.5) | 3,150(-2.0) | 3,085(-1.7) |
|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 5,106(4.8) | 5,376(5.3) | 5,529(8.8) | 5,246(8.5) | 5,630(1.8) | 5,316(1.3) |
|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| 2,492(3.4) | 2,584(3.7) | 2,602(4.2) | 2,536(3.5) | 2,678(2.9) | 2,590(2.1) |
| 교육서비스업 | 3,355(-0.3) | 3,435(2.4) | 3,664(2.4) | 3,555(3.8) | 3,735(1.9) | 3,650(2.7) |
|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3,014(2.5) | 3,122(3.6) | 3,134(4.1) | 3,033(4.0) | 3,140(0.2) | 3,043(0.3) |
|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2,994(4.2) | 3,077(2.8) | 3,138(4.2) | 2,940(1.6) | 3,145(0.2) | 2,915(-0.8) |
|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| 2,700(5.4) | 2,832(4.9) | 2,873(5.3) | 2,765(3.1) | 3,081(7.2) | 3,039(9.9) |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,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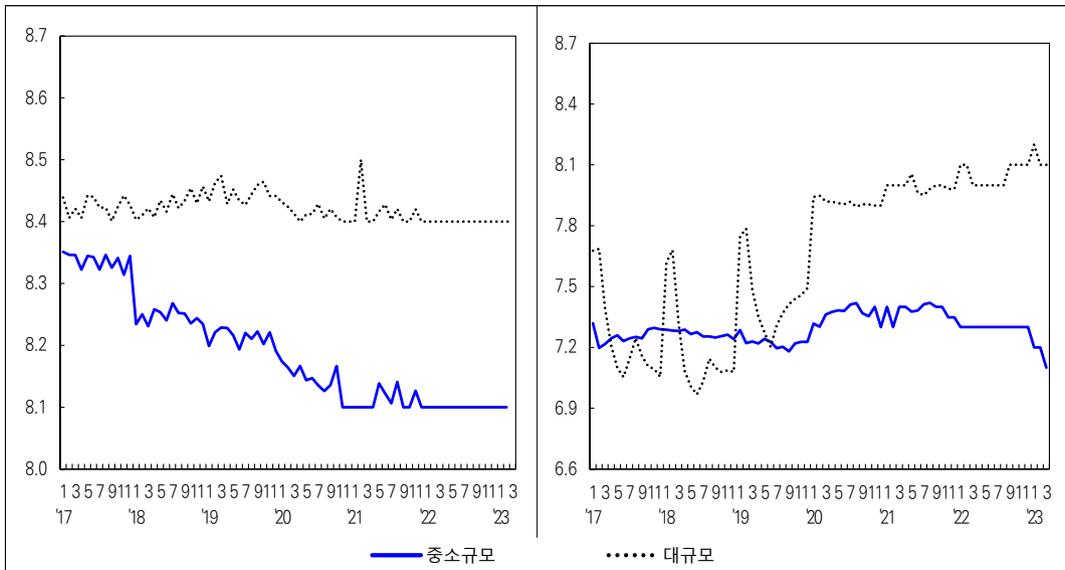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.7시간 증가(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)

- 2023년 3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.1시간 증가,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4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2시간 감소함.
 - －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,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한 데다 전년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던 기저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.
 - －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.
- 2023년 3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, 중소기업은 165.4시간으로 5.1시간 증가, 대규모 사업체는 169.3시간으로 8.5시간 증가함.
 - － 중소기업보다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은 전년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근로시간 감소가 더 컸던 기저 영향으로 보임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시간/일)



주 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,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,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표 4〉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| | | 2021 | 2022 | 2022 | | 2023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1~3월 | 3월 | 1~3월 | 3월 |
| 중소 규모 | 전체 근로시간 | 160.3(0.1) | 158.3(-1.2) | 152.6(-2.0) | 160.3(-4.7) | 156.8(2.8) | 165.4(3.2) |
| | 상용 총근로시간 | 167.8(0.1) | 165.9(-1.1) | 159.3(-2.0) | 167.8(-4.8) | 165.2(3.7) | 174.5(4.0) |
| |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| 160.1(0.2) | 158.2(-1.2) | 151.7(-2.1) | 159.7(-5.1) | 158.4(4.4) | 167.4(4.8) |
| | 상용 초과근로시간 | 7.7(-1.3) | 7.7(0.0) | 7.6(0.0) | 8.1(2.5) | 6.8(-10.5) | 7.2(-11.1) |
| | 임시일용 근로시간 | 97.4(1.4) | 96.4(-1.0) | 94.6(-0.1) | 96.4(-1.3) | 89.2(-5.7) | 93.0(-3.5) |
| 대규모 | 전체 근로시간 | 162.3(-0.3) | 160.4(-1.2) | 154.1(-3.3) | 160.8(-6.1) | 161.5(4.8) | 169.3(5.3) |
| | 상용 총근로시간 | 163.4(-0.3) | 161.7(-1.0) | 155.1(-3.2) | 162.1(-6.0) | 163.1(5.2) | 171.1(5.6) |
| |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| 152.3(-0.5) | 150.6(-1.1) | 144.2(-3.4) | 150.8(-6.6) | 152.4(5.7) | 160.5(6.4) |
| | 상용 초과근로시간 | 11.1(1.8) | 11.0(-0.9) | 11.0(0.9) | 11.3(3.7) | 10.7(-2.7) | 10.6(-6.2) |
| | 임시일용 근로시간 | 127.9(2.2) | 125.0(-2.3) | 122.7(-4.4) | 121.5(-6.8) | 118.6(-3.3) | 118.9(-2.1) |

주: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3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(-2.2%)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2023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(183.9시간)이었으며, 다음으로 제조업(181.8시간)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(178.4시간), 부동산업(176.7시간) 순임.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(138.8시간)으로 나타남.
-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근로시간 감소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에서 비롯됨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| | 2021 | 2022 | 2022 | | 2023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1~3월 | 3월 | 1~3월 | 3월 |
| 전 산업 | 160.7 (0.1) | 158.7(-1.2) | 152.8(-2.2) | 160.4(-4.9) | 157.6(3.1) | 166.1(3.6) |
| 광업 | 179.9(-0.7) | 174.8(-2.8) | 168.5(-4.4) | 179.9(-6.3) | 170.7(1.3) | 183.9(2.2) |
| 제조업 | 173.5(0.5) | 171.1(-1.4) | 165.0(-2.7) | 174.0(-5.2) | 171.7(4.1) | 181.8(4.5) |
|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161.6(-1.3) | 158.6(-1.9) | 152.2(-3.1) | 145.3(-7.5) | 159.3(4.7) | 156.3(7.6) |
|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| 176.9(0.2) | 174.4(-1.4) | 169.3(-2.0) | 178.0(-3.8) | 170.9(0.9) | 178.4(0.2) |
| 건설업 | 135.9(-0.7) | 134.3(-1.2) | 129.9(-2.0) | 135.6(-3.6) | 130.6(0.5) | 138.8(2.4) |
| 도매 및 소매업 | 163.8(0.0) | 162.3(-0.9) | 156.5(-1.8) | 164.4(-4.1) | 161.2(3.0) | 169.1(2.9) |
| 운수 및 창고업 | 160.2(0.8) | 160.6(0.2) | 154.3(-0.7) | 160.9(-3.4) | 160.5(4.0) | 168.1(4.5)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148.4(-0.9) | 146.5(-1.3) | 140.5(-1.2) | 147.0(-3.4) | 139.1(-1.0) | 143.8(-2.2) |
| 정보통신업 | 164.1(0.2) | 162.7(-0.9) | 156.2(-2.0) | 164.6(-4.7) | 163.6(4.7) | 172.5(4.8) |
| 금융 및 보험업 | 161.9(-0.1) | 159.8(-1.3) | 152.8(-3.7) | 161.0(-6.9) | 162.5(6.3) | 171.5(6.5) |
| 부동산업 | 171.8(-0.8) | 169.4(-1.4) | 163.3(-2.8) | 171.3(-4.7) | 168.3(3.1) | 176.7(3.2) |
|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 161.6(-0.1) | 160.3(-0.8) | 153.7(-2.4) | 161.9(-5.3) | 160.5(4.4) | 169.7(4.8) |
|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| 162.1(0.2) | 159.8(-1.4) | 154.7(-2.0) | 161.8(-5.0) | 159.3(3.0) | 167.1(3.3) |
| 교육서비스업 | 137.2(0.4) | 136.1(-0.8) | 130.0(-1.7) | 136.4(-6.1) | 136.8(5.2) | 146.3(7.3) |
|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158.3(-0.2) | 155.3(-1.9) | 149.4(-2.5) | 156.6(-5.6) | 151.8(1.6) | 160.2(2.3) |
|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152.7(2.0) | 150.8(-1.2) | 144.7(1.2) | 152.8(-4.0) | 149.6(3.4) | 156.6(2.5) |
|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| 162.4(1.3) | 160.3(-1.3) | 155.0(-1.5) | 161.4(-4.5) | 161.6(4.3) | 169.2(4.8) |

주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,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3건
 - －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7건)보다 4건 적은 수치임.
- 2023년 5월 조정성립률 14.3%
 - － 5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1.1%보다 3.2%p 높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2년, 2023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| | 접수 건수 | 처리 건수 | 조정성립 | | | 조정불성립 | | | 행정 지도 | 취하 철회 | 진행 중 | 조정 성립률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| | | 소계 A | 조정안 수락 | 합의 취하 | 소계 B | 조정안 거부 | 조정 중지 | | | | |
| 2023. 5 | 13 | 9 | 1 | 0 | 1 | 6 | 1 | 5 | 1 | 1 | 9 | 14.3% |
| 2022. 5 | 17 | 13 | 1 | 0 | 1 | 8 | 0 | 8 | 0 | 4 | 8 | 11.1%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중재사건

- 202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
 - － 5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건)와 같은 수치임.
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.

〈표 2〉 2021년, 2022년 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| | 접수 건수 | 처리 건수 | | | | 진행 중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소계 | 중재재정 | 행정지도 | 취하철회 | |
| 2023. 5 | 1 | 1 | 0 | 0 | 1 | 1 |
| 2022. 5 | 1 | 2 | 2 | 0 | 0 | 3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심판사건

- 202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25건
 -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186건)보다 39건 많은 수치임.
 -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5.0%(34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75.0%(102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2년, 2023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| | 접수 건수 | 처리 내역 | | | | | | | 진행 중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
| | | 계 | 전부 인정 | 일부 인정 | 기각 | 각하 | 취하 | 화해 | |
| 2023. 5 | 225 | 136 | 26 | 8 | 62 | 6 | 12 | 22 | 519 |
| 2022. 5 | 186 | 171 | 39 | 11 | 99 | 4 | 9 | 9 | 467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복수노조사건

- 2023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0건
 - 5월 복수노조사건¹⁾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7건)보다 3건 많은 수치임.
 -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71.4%(5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28.6%(2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1년, 2022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| | 접수 건수 | 처리 내역 | | | | | | | 진행 중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
| | | 계 | 전부 인정 | 일부 인정 | 기각 | 각하 | 취하 | 화해 | |
| 2023. 5 | 10 | 7 | 5 | 0 | 2 | 0 | 0 | 0 | 12 |
| 2022. 5 | 7 | 7 | 1 | 0 | 5 | 0 | 1 | 0 | 11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

◆ 한국노총 “경사노위 불참”

- 6월 7일 한국노총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(경사노위) 탈퇴를 결의했음.
-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, 5월 경찰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연행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음.
- 김 처장은 5월 29일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음.
- 경찰은 이틀 만인 5월 31일 농성 진압에 나섰고,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경찰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된 뒤 구속됐음.
- 한국노총은 이날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(중집)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음.
-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임.
- 한국노총은,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자,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음.

◆ 비노조 노동자 85% “올 최저임금, 생계 꾸리기 부족”

- 5월 24일 민주노총은 ‘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’ 결과를 발표했다.
- 올해 최저임금(시급 9,620원,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)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84.8%가 ‘부족하다’고 답했음.
- 정규직(84.8%)과 비정규직(85.2%)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음.
-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인으로는 10명 중 8명이 ‘물가상승률’(43.7%) 또는 ‘생계비’(37.5%)를 꼽았음.
- ‘경제성장률’은 4.5%, ‘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및 인상률’ 3.4%, ‘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’ 2.5%, ‘기업의 지불능력’ 1.4%, ‘실업률 등 고용 사정’은 0.8%뿐이었음.
- 응답자 62.5%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이 월 230만 원(시급 약 1만 1,000원)은 돼야 한다고 봤음.
- 민주노총은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시민 7,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미조직 노동자 5,3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했음.

◆ 배달플랫폼노조 · 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 잠정합의

- 6월 3일 배달플랫폼노조와 배달의민족 자회사 (주)우아한청년들은 2022년도 단체교섭 핵심 쟁점에 잠정합의했음.
- 라이더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월별 배달수행 건수 조건을 달성하면 지원금 월 21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.
- 서울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월 520건 이상, 서울 이외 지역은 월 46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하면 1년에 258만 원을 받게 됨.
-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동안 휴가비 · 피복비 · 건강검진비 · 안전교육비 · 명절선물 등 총 148만 원을 받았는데, 총 110만 원이 인상되는 것임.
- 노사는 라이더가 지속가능한 배달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음.
- 현장에 콜이 부족한 상태고, 배달 라이더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콜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.

◆ 2024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 공제 제외

- 6월 8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수가 1천 명이 넘는 노조가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.
- 노동부는 2023년 결산서를 공시한 노조의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임.
-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 회비의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금으로 인정, 연말정산 때 세액을 공제 받음. 하지만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.
- 1천 명 이상 노조는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임.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 회계를 공시해야 함.
- 노조 결산결과를 노동부가 구축 중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계획임.
-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함.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조합원(대의원)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음.

◆ 타워크레인 노동자 10명 중 7명 “공사기간 줄이려 위험작업 강요”

- 5월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3월 9~10일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조합원 2,2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. ‘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위험 작업을 강요 또는 지시받은 적 있느냐’는 질문에 73.4%(1,620명)가 ‘있다’고 응답했음. ‘없다’는 응답은 26.6%(587명)에 그쳤음.
-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요구받은 작업 유형으로는 ‘기상악화에도 작업강행’(23.56%), ‘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 미확보 작업 강요’(18.4%), ‘인양물 낙하 및 파손 등 위험 작업 강요’(16.81%) 등이 꼽혔음.
- 위험 작업을 강요·지시한 건설업체를 묻는 질문에는 52.15%가 ‘단종’(하청업체)을 꼽았으며, 그다음으로 ‘없다’(26.6%), ‘원청회사’(20.98%) 순이었음.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타워크레인 ‘임대사’라고 답한 것은 0.27%에 불과했음.
- ‘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부당한 작업을 얼마나 강요받았느냐’는 질문엔 ‘매일 수시로 받는다’가 34.03%로 가장 많았고, ‘주 5회 미만’(30.54%), 무응답(29.04%) 등이 뒤를 이었음.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(관행이나 의식이) 바뀌었느냐는 질문엔 ‘전혀 없다’(35.39%), ‘없다’(32.35%)고 응답했음. ‘약간 바뀌었다’는 30.36%, ‘많이 바뀌고 있다’는 1.9%에 그쳤음.

◆ 배달·대리기사도 내달부터 산재 적용

- 6월 6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(산재보험법상)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됨. 택송기사·대리주차원, 관광통역안내원, 어린이통학버스기사, 방과후학교강사, 건설현장 화물차주(살수차, 고소작업차, 카고크레인 기사)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됨.
- 노동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,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리라 전망했음.
- 사업주는 7월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,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함.
- 그동안 대리기사·배달라이더 등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1조(감정노동자보호법) 적용에선 여전히 배제돼 있었음. 산업법 41조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임.

◆ **늘봄학교 2학기 300곳으로 확대**

-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‘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’을 발표했다.
- 교육부는 인력이나 공간 확보 방안으로 △돌봄교실 증설과 학교 리모델링 추진 △특별실·도서관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우선 마련 △돌봄전담사, 퇴직교원, 실버인력 등 적극 활용 △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로의 업무이관과 전담인력 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.
- 늘봄학교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으로, 현재 경기·인천·경북·대전·전남 등 5개 교육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임.
- 교육부는 2개 교육청 100개 내외의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, 2학기부터 총 7~8개 교육청의 300여 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임.
-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새 이름으로,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하고 아침돌봄·틈새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임.

◆ **청년 10명 중 7명 “소득만으로 내집 마련 불가능… 부모 찬스 필수적”**

- 5월 15일 한국청소년연구원은 ‘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’를 발표했다.
- 조사 결과를 보면 ‘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’는 응답은 81.2%를 기록했고,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‘안정적인 삶을 위해서’가 80.7%로 가장 높았음.
- ‘자산 상승을 목적으로’(9.3%), ‘결혼을 하기 위해서’(6.0%) 등이 뒤를 이었음.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‘3억~5억 원 이내’(31.6%), ‘5억~10억 원 이내’(29.4%) 등으로 추산했음.
- 청년 76.3%는 ‘소득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가’라는 질문에 ‘그렇지 않다’고 답했음. ‘전혀 아니다’ 42.2%, ‘별로 그렇지 않다’ 34.1%로 나타났음.
-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갈리는 등 ‘공정하지 못하다’고 인식했음.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느냐는 질문에 ‘공정하지 않다’는 응답이 74.4%로 가장 높았음.
-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조건으로는 ‘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원’이라는 응답이 51.5%로 가장 높았음. 응답자 76.9%는 내 집 마련에 ‘부모의 자금지원은 필수적’이라고 했음.
- 연구원은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19~34세 청년 4,0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.

◆ 여성 노동자 "20년 중에 10년은 최저임금 이하 받아"

- 5월 22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~17일 여성 노동자 1,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나의 최저임금'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설문에 응한 여성 노동자 98.5%는 '현재 최저임금(시급 9,620원, 월 201만 580원)으로는 생활 안정이 가능하지 않다'고 답했음. '절대 아니다'가 66.2%, '아니다'가 32.3%였음.
- 생활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718명이 '물가'를 꼽았음. "라면, 세제, 우유 등 안 오른 제품이 없다", "저 돈으로 1인 가구도 생활하기 어렵다" 등의 의견이 나왔음.
-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또는 그 미만을 받으며 일했음.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답한 응답자 981명은 평균 19.8년을 일했음.
-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노동경력의 57.0%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음.
- 현재 받는 임금도 '최저임금'이라는 응답이 51.3%로 절반을 넘었음.
- '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회사의 기본급 설정 기준이 최저임금'이 18.3%, '최저임금 미달'이 17.0% 등이었음. '최저임금보다 높다'는 응답은 10.6%에 그쳤음.
- 조사는 직업 구분 없이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음. 50대가 45.3%, 40대가 32.2% 등 중장년층 응답자가 많았음.

◆ 직장인 60%,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다

- 6월 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 인퍼블릭에 의뢰해, 지난 3월 3~10일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응답자 60.5%가 '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'고 하였음.
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'매우 자주 받는다' 14.5%, '가끔 받는다'는 답변이 46.0%였음.
- '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'는 질문에 24.1%가 '그렇다'고 응답했음.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'퇴근 후 업무'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음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